

컨소시엄 협약 참여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 교육본부」입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글로벌헬스케어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해왔고, 언어별 의학용어 소사전 및 의료인을 위한 회화책, 병원해외진출(법률분야) 표준교재를 발간하여 관련 의료 기관에 배포하고 의학용어 온라인 프로그램 다국어버전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4년부터 보건산업 교육본부 전용 교육장 설립과 함께 「의료기관 재직자 및 관련 산업분야 재직자들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함께 정부부처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 외에도 제약 · 화장품 · 의료기기 · U-Health등 보건산업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 및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귀 협회 및 보건산업분야 관련 기관 소속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참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누락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협조 및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18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문의: 02-3299-1416/1431)

1. 협약 절차

※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가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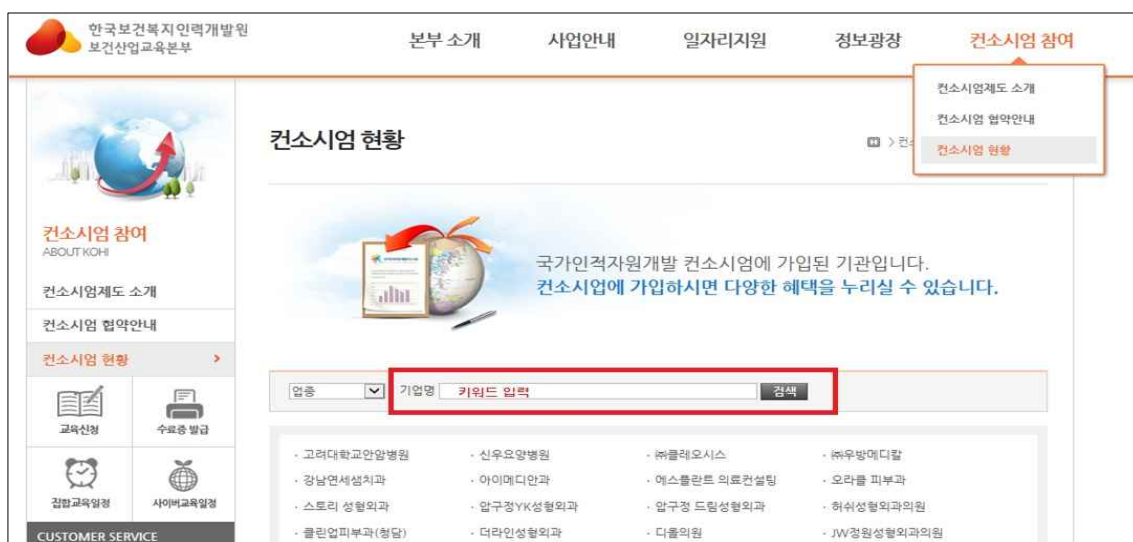
- 협약 기업 여부 조회 (<http://hi.kohi.or.kr>)
- 협약 기업 신청 및 승인 (<http://hi.kohi.or.kr>)
- 협약서 출력 (<http://gohi.kohi.or.kr>)

1 협약 기업 여부 조회

① 홈페이지(<http://hi.kohi.or.kr>) 접속 → 컨소시엄 참여 → 컨소시엄 현황



② 협약 기업 여부 조회



※ 협약 기업 리스트에 없다면, 2 협약 기업 신청 및 승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② 협약기업 신청 및 승인

※ 반드시 ① 협약기업 신청 → ② 재직자 회원가입 순으로 진행바랍니다.

① 협약기업 신청

㉠ 홈페이지(<http://hi.kohi.or.kr>) 접속 → 컨소시엄 참여 → 컨소시엄 협약안내



㉡ 컨소시엄 협약 신청 바로가기



회원 가입 ☰ > 회원서비스 > 회원가입

STEP 01 약관동의 STEP 02 인증 **STEP 03 정보입력** STEP 04 완료

*회사명	<input type="text"/>	*대표자명	<input type="text"/>
*고용보험관리번호	11082107610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고유아저 지어느려개

-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미입력시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협약서 작성 시,
 - 1)기관 직인 (JPG파일) 2) 사업자 등록증 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바랍니다.

회원 가입 ☰ > 회원서비스 > 회원가입

STEP 01 약관동의 STEP 02 인증 STEP 03 정보입력 **STEP 04 완료**



한국요양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고용보험관리공단

환영합니다.

컨소시엄 협약신청이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컨소시엄 협약신청의 경우 관리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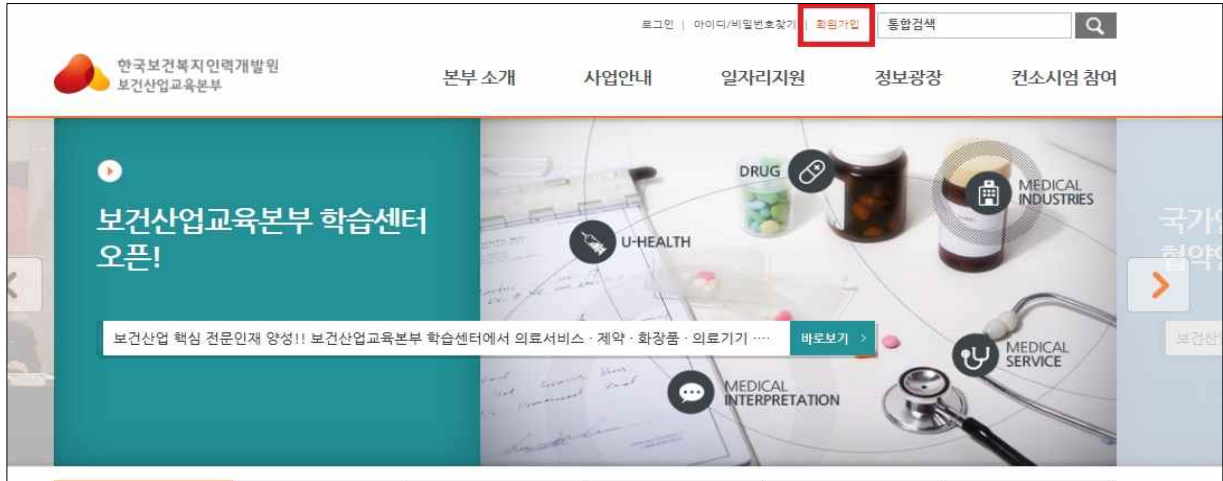
승인이 완료 될 때까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약 신청서 작성 완료가 되면 02-3299-1416으로 승인 확인 전화를 하신 후에, '② 재직자 회원 가입' 절차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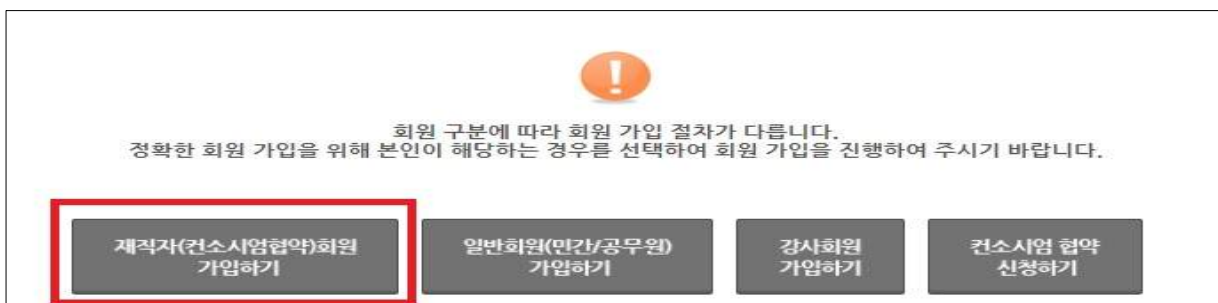
② 재직자 회원 가입

※ 협약 기업 승인 후 협약서 출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약 또는 교육 담당자가 직접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hi.kohi.or.kr>) 접속 → 회원가입



㉡ 회원가입 양식 작성



3 협약서 출력

※ 협약 또는 교육담당자는 “기업담당자”로 권한이 변경된 후, 협약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http://gohi.kohi.or.kr>)접속 → 로그인



② “기업 담당자” 권한 확인



- 기업 담당자 권한이 아닌 경우, 02-3299-1416으로 연락바랍니다.

③ 마이페이지 → 협약서 출력



- 협약서 입력 사항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1번
- 협약서 입력 사항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 2번

2. 협약서 양식

※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될 협약서 양식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사업에 관한 운영기관과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①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진흥법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2.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등 지원
3.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약기업은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

제3조(훈련과정운영비에 관한 약정) ① 운영기관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
2.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② 운영기관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협약기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기업에 훈련과정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협약기업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운영비를 운영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협약서의 체결) ①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이 명시적으로 본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2. 협약기업이 운영기관에서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를 참여시킨 경우. 이 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의 체결시점은 운영기관이 해당 근로자가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실시신고를 공단에 하고 이를 공단이 수리한 날로 본다.

② 운영기관이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정한 전산시스템에 운영기관이 관련 사항을 등록한 것으로 제1항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성실의무) 운영기관과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운영기관)

(참여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주 소 :

대표자 : 류 호 영

(인)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1부

【 첨부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본사)	우편번호(-)				
업 태		업 종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 명			HRD부서명	
	전화번호	사무실:		FAX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홈페이지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p>【 기타 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태: 사업자등록증 참고 - 업종: 의료서비스업, 의료산업, 제약, 의료기기, 의료기관, 한방병의원, 화장품, 기타 중 선택 - 담당자: 기관 내 교육 담당자 지정, 협약 기업 등록 후 교육 안내 등 정보 메일 발송 예정 - 고용보험관리번호(11자리): 고용보험 담당부서에 문의 (사업자등록번호 + 0또는 1) 					

컨소시엄 협약관련 Q&A

1. 저희는 대학병원이라서 사학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수의 계약직분들이 고용기금을 내고 있지만 정규직은 고용보험기금을 내고 있지 않는데 컨소시엄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 네. 컨소시엄 협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내는 금액과 그 해당인원분들이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기관 간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소속 직원분들이면 글로벌헬스케어관련 교육을 무료로 참여할수 있고, 교육비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협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을 무료로 참여하기 힘들고 교육정보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협약서를 보면 제 3조 1항에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 기관이 돈을 내야 하나요?
 - 거의 무료로 교육이 진행이 되지만 일부 교육프로그램은 유료교육이 있습니다. 유료교육이 생길 가능성은 적지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교육참여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유료교육이 부담이 된다면 참여를 안하셔도 됩니다.
3. 첨부문서 중 참여기관 일반현황에서 고용보험 관리번호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고용보험관리번호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금액은 월/연단위로 고용보험기금 납부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